

보험업감독규정

<목 차>

1. 외화보험 모집시 준수사항 신설
2. 외화보험 자산의 특별계정 설정·운용 의무화
3. 외화중신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강화
4. 최적해지율 산출기준 명시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자	이름	박성진
	담당부서 (과)	보험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신진창		연락처	02-2100-2967
	과장	신상훈		이메일	cosmos777@korea.kr

2022. 10. 2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외화보험 모집시 준수사항 신설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의5, 제4-35조의2		
	3.위임법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2.14 ~ 2023.03.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성 보험상품이 외화보험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외화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여 보호를 강화할 필요 ○ 또한,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에 대한 설명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도록 하여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개입할 필요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보험 모집시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에 대한 설명,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규제집단)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 (이해관계자)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9.규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보험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손실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외화보험 가입에 적합한 실수요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생명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운영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원칙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없이 일부 제도 보완을 통해 제도 운영이 가능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차. <u>외화보험의 경우 다음 각 세</u> <u>목의 사항</u> 1) <u>환율변동에 따라 보험료</u> <u>및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u> <u>다는 사실</u> 2) <u>해지환급금</u></p>
<p>차. 그 밖에 가목부터 <u>아목까지</u>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 이 정하는 사항</p>	<p>카. ----- <u>차목까지</u>- ----- -----</p>
<p>4. (생 략)</p>	<p>4. (현행과 같음)</p>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만기가 긴(30년 이상) 보장성 보험(종신, 질병보험)과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위주**로 판매
- 최근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대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판매과정에서 '환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중이 증가**

* 판매규모(수입보험료, 억원) : ('17) 3,046 → ('18) 6,772 → ('19) 9,689 → ('20) 14,256 → ('21.1~9월) 9,742

** 외화보험 신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 : ('18) 0.26% → ('19) 0.37% → ('20) 0.38%

전체 불완전판매 중 외화보험 비율 : ('18) 0.7% → ('19) 1.9% → ('20) 3.2%

- 외화보험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이므로 '동일상품-동일규제'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 또한 외화보험 판매시 환차익만을 강조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에 대한 설명과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가능성을 설명하도록 규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외화보험은 투자성이 있으므로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외화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가 실수요 여부인지를 확인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 또한, 환차익만을 강조한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가능성을 설명할 필요

- 보험협회가 외화보험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3. 규제목표

- 외화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
- 보험계약자가 외화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적합성·적정성원칙 적용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생명보험회사는 이미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시스템 개발, 직원 교육 등 규제에 따른 비용보다 불완전판매 방지 등에 따른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아웃바운드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험영업 특성상 외화보험의 환차익 등 장점만을 강조한 불충분한 설명만을 믿고 가입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환율은 예측하기 힘든 경제지표로서 변동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령 시점을 선택할 수 없어 실수요자**가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고 가입할 필요

* 최근 10년간 환율(원/달러) : 최고치 1,280원 / 최저치 1,008원

** 장래에 외화로 보험금이 필요시 환율에 관계없이 충분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기존에도 변액보험 등 투자적 성격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일반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외화보험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임

- 또한 외화보험 판매시 보험료,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은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으로 판단됨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일본, 대만 등 외화보험 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부적절한 상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규제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기존에도 변액보험과 같이 투자성 있는 보험상품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중이며 이를 외화보험에 확대적용하고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비용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2. 향후 평가계획

- 외화보험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도입여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준수를 확인할 계획

3. 종합결론

- 외화보험 판매시 일반금융소비자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성·적합성 원칙 적용 및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및 업계 자율적인 규제준수 등을 장려하기 위해 동 규정 개정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외화보험 자산의 특별계정 설정·운용 의무화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3.위임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제52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2.14 ~ 2023.03.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외화보험이란 보험료납입-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자산운용 또한 외화자산에 집중하여 원화보험 가입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임</p> <p>○ 그러나, 현재는 보험사의 일반계정에서 원화보험 적립금과 구분없이 자산운용이 이뤄지고 있어, 외화보험 자산수익률이 낮을 경우 원화보험 계약자의 수익까지 감소됨</p> <p>○ 투자성과에 따른 손익 귀속을 합리화하기 위해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도록 규제 필요</p>								
	7.규제내용	○ 외화보험은 일반계정 자산과 분리·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특별계정을 설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p>○ (피규제집단) 외화보험 판매 중인 4개 보험사 중 3개사*</p> <p>* 1개사는 외화보험을 자산연계형 상품으로 개발하여 이미 특별계정으로 운영 중</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보험회사</td> <td>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3개사</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3개사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보험회사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3개사								
9.규제목표	○ 투자에 따른 운용수익 귀속을 합리화하여 상품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품운영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외화보험에서 발생한 투자성과가 모두 외화보험계약자들에게 귀속되며, 투자성과가 저조할 경우에도 그 영향이 원화보험 계약자에게 까지 미치는 것을 제한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5-6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 보험회사는 법 제108조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u>외화보험계약(단, 변액보험계약, 자산연계형보험계약은 제외)</u>
② 특별계정(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별로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② ----- ----- ----- ----- <u>유무, 보험료 및 보험금에 적용하는 통화의 종류</u>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u>제1항제2호</u> 에 의해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u>보험계약</u> 의 적용이율은 해당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 또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산출방식을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u>제1항제2호</u> 및 <u>제7호</u> ----- ----- <u>금리연동형 상품</u> ----- ----- -----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① (생략)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② -----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 보험사는 '외화'로 납입 받은 보험료를 '외화' 표시 장기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고객은 외화자산의 높은 운용수익을 기대하며 가입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사는 외화보험계약의 운용자산을 일반계정에서 원화보험계약과 함께 운영하고 있어 투자성과에 대해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외화보험 자산의 관리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보험과 유사하게 他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도록 의무화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종류에 구분없이 보험료를 일반계정에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변액보험, 자산연계형보험 등과 같이 별도의 자산운용방법으로 운영하는 특성이 있는 상품들은 특별계정에서 운영하고 있음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6호)

⇒ 특별계정으로 운영해야 하는 대상에 외화보험을 추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보험회사	「외화보험 제도개선 TF」(‘21.5~8월), 전문가·업계 의견수렴(9~11월) 등을 거쳐 마련한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21.12월)」의 후속조치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3. 규제목표

- 투자에 따른 운용수익 귀속을 합리화하여 상품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품운영 유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생명보험회사는 이미 변액보험, 연금저축, 자산연계형 상품 운영에 따른 특별계정 운영 조직을 운영중에 있으므로
 - 시스템 개발, 직원 재배치 등 규제에 따른 비용보다 운영합리화 등에 따른 고객보호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 운영중인 특별계정 대상 계약에 외화보험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보험사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상품특성에 따른 적절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상품 특성에 따른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 타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상품 특성에 따른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 타당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상품 특성에 따른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 타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상품 특성에 따른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후 평 가관리 방식 적용이 타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상품 특성에 따른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규제 샌 드박스 활용이 타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규제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적용 중인 특별계정운영 대상계약의 적용 범위를 외화보험계약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적용 중인 특별계정운영 대상계약의 적용 범위를 외화보험계약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히 사항은 없었음

2. 향후 평가계획

- 향후 금감원 검사 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실제 제도이행 정도를 확인할 계획

3. 종합결론

- 상품특성에 따른 투자손익배분, 원화계약 보험계약자 보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규정 개정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외화종신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강화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24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67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3.02.14 ~ 2023.03.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외화종신보험은 원화기준 보험금이 환율에 따라 변동하는 등 환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상품이므로 과도한 푸시마케팅을 제어하고 '외화' 실수요자에게만 상품이 권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7.규제내용	○ 외화종신보험의 사업비가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상품의 사업비 수준을 공시 (현재는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9.규제목표	○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고객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외화종신보험 가수요 차단을 통한 민원감소 기대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외화종신보험'은 일반종신보험과 동일하게 종신토록 사망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최근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대 등으로 판매가 증가

* 판매규모(수입보험료, 억원) : ('17) 3,046 → ('18) 6,772 → ('19) 9,689 → ('20) 14,256 → ('21.1~9월) 9,742

- 외화보험은 보험금이 외화로 지급되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으로는 손실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해외이주, 자녀상속 등 외화 실수요가 있어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정수준 이상의 과도한 외화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부적절

- 외화보험 판매시 환차익만을 강조하며 실수요층이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필요수준 이상의 외화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Outbound 영업에 대한 규제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책정한 외화종신보험은 사업비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도록 규제강화 (현재는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책정한 경우에만 공시 중)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3. 규제목표

- 외화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외화중신보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외화' 실수요가 없는 고객에게 까지 무분별하게 상품을 권하도록 과도한 모집수당체계를 운영,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사업비수준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규제준수에 어려움은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외화종신보험의 사업비를 인하하는 경우 보험상품 개정작업이 필요하나, 보험상품개정은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라 연중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규제준수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비용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개선사항이 보험사의 과도한 외화종신보험 푸시마케팅을 제어하고 보험료 완화로 이어지는지 지속모니터링할 계획

3. 종합결론

- 외화종신보험의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부가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제고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최적해지율 산출기준 명시		
	2.규제조문	보험업감독규정 제7-75조의2		
	3.위임법령	보험업법 제129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2.14 ~ 2023.03.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저해지보험’ 개발시 보험사가 해지율을 임의로 높여 사용할 경우 보험료는 저렴해져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하나, 향후 보험사 건전성 문제 발생 * (무·저해지보험) 보장내용은 동일하나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게 설계하여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 		
	7.규제내용	○ 최적해지율 등 해지율 산출 관련 기준 마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집단) 보험회사		
	9.규제목표	○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보험가격경쟁을 제어하고 적정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잘못된 해지율 예측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보험사 재무적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u>제7-75조의2(생명보험 최적해지율의 산출기준)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 해지율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적해지율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7-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한 최적해지율은 보수적으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u></p>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보험')은 가격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 지속 증가

* 신계약건수 : ('16) 30.4만건 → ('18) 171.7만건 → ('20) 443.5만건

- 보험료 산정시 예상한 해지율 수준이 높다면 보험료 인하효과는 크겠지만 향후 계약의 실제 해지율이 예상수준을 하회한다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문제 발생
- GA확대 등 회사간 보험료 비교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경쟁 심화로 해지율을 적정수준보다 높게 설정해 보험료를 낮춘 출혈경쟁 구조가 전개 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최적해지율은 보험사의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기초로 설정하며 보험료 산출시에도 이보다 과도한 수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음

3. 규제목표

- 보험사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상황 방지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명확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외 보험요율 산출요소인 위험률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 중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②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을 참고한 보험요율(이하 "통계요율"이라 한다)을 산출할 수 있다.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규제준수에 어려움은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집행에 어려움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비용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음

2. 향후 평가계획

- 해지율 산출시의 기초통계와 산출방식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

3. 종합결론

- 수지상등에 따른 적정 보험료를 수취하여 보험산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